

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6. 3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의 서비스사업에 대한 내용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
나. 기업부설연구소 및 소속 인력의 관내 이전에 대한 혜택과 지원으로 기업의 지역 정착 도모, 연구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 촉진

2. 주요내용

가. 연구인력 및 서비스사업에 관한 정의 신설(안 제2조)
나. 기업부설연구소 신증설, 임차 및 이전에 대한 지원(안 제23조, 제24조)
다. 연구소를 관내 이전,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(안 제25조)
라. 관내 이전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에 대한 혜택(안 제27조)
마. 관내 신설 등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소속 인력 처우개선(안 제28조)
바.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38조)
사. 용어, 띄어쓰기 및 인용사항 정비(안 제2조~제4조, 제6조, 제9조, 제11조~제13조, 제15조, 제21조, 제25조의2~제26조의2, 제29조~제31조, 제35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업발전법 시행령」,

「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-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- 구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통과

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”을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구미시”를 “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제14조2”를 “제14조의2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2호(종전의 제11호) 중 “산업통상자원부”를 “산업통상부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“연구인력”이란 제2조제7호에 근무하는 연구원을 말한다.

13. “서비스사업”이란 「산업발전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본문 중 “연임”을 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투자유치담당과장”을 “투자유치 담당 과장”으로, “투자유치담당주사가”를 “투자유치 담당 팀장이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회의일시”를 “회의 일시”로, “회의개최 3일전”을 “회의 개최 3일 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갖추어둔다”를 “갖추어 둔다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투자촉진”을 “투자 촉진”으로, “경제관련”을 “경제 관련”으로, “관련분야”를 “관련 분야”로, “운영 할”을 “운영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법 제13조”를 “법 제13조, 제13조의3”으로, “「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고용인원”을 “고용 인원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외국인투자에 한한다”를 “외국인투자로 한정한다”로 한다.

제2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연구소 신증설의 경우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4조제1항 중 “본사 또는 공장을”을 “본사, 공장 또는 연구소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연구소를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내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⑤ 연구소 임차 및 이전의 경우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총 3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

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“기업에 한한다”를 “기업으로 한정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연구소와 연구인력의 지역 유치를 위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이 10억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국내기업에 대하여 연구소를 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 경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5조의3제1항 중 “신·증설”을 “신증설”로, “산업통상자원부”를 “산업통상부”로 한다.

제25조의4제1항 중 “신·증설”을 “신증설”로, “근로자 세대”를 “근로자”로, “가족”을 “본인 및 가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근로자에 한하며”를 “근로자로 한정하며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지원 할”을 “지원할”로 한다.

제26조의2제1항 중 “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”을 “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”으로, “한하여”를 “한정하여”로 한다.

제4장에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(연구인력 우대 혜택) ①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의 연구소 및 소속 연구인력이 관내로 주소 이전하는 경우 해당 연구인력에 대하여 월 100만원씩 2년간 우대 혜택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시장은 기업의 본사, 공장 또는 연구소에 대한 3년 이상 존치·공장 관련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소속 연구인력에게 1인당 월 30만원 한도에서 1년 단위로 3년간 우대 혜택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28조(연구소 및 연구인력 처우개선) 시장은 기업의 연구소 신증설 또는 제27조제2항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연구소 및 소속 연구인력에게 연구개발 및 대출이자 지원, 산학연구개발 지원, 지역시설 이용료 감면 또는 시의 각종 경제·기업 지원정책, 정부 지원 공모사업, 그 밖의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산점 부여 등 우대지원할 수 있다.

제29조 앞의 “제6장 보칙”을 “제5장 보칙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국내·외”를 “국내외”로, “특별지원 할”을 “특별지원 할”로 한다.

제29조의2제1항 중 “구미시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제30조 중 “신재생에너지”를 “신·재생에너지”로 한다.

제31조의 제목 “(관광사업 지원)”을 “(관광·서비스사업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제2조제9호에 따른 관광사업”을 “제2조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관광 및 서비스사업”으로, “상시고용 인원”을 “상시고용인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관광 사업”을 “관광 및 서비스사업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원 받은 자”를 “지원받은 자”로, “지원 받은 금액”을 “지원받은 금액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목적달

성”을 “목적 달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감소인원”을 “감소 인원”으로 한다.

제38조를 제39조로 하고,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, 공공기관,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조금 등 지원에 대한 적용례)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, 제27조, 제28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미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외국인”이란 「<u>외국인투자촉진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,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4. “투자유치”란 기업이 투자를 위하여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<u>구미시</u>에 투자하기로 한 경우를 말하며, 기업이 자체 결정에 따라 사전 투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5.·6. (생략)</p> <p>7. “연구소”란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<u>제14조2</u>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8. ~ 10. (생략)</p> <p>11. “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”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「<u>외국인투자촉진법</u>」----- ----- 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<u>시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--- ----- <u>제14조의2</u>----- -----.</p> <p>8. “<u>연구인력</u>”이란 <u>제2조제7호</u>에 근무하는 연구원을 말한다.</p> <p>9. ~ 11. (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)</p> <p>12. -----</p>

이란 지방자치단체, 근로자,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와 근로여건, 투자계획,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해 합의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.

<신 설>

제3조(투자유치위원회 설치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,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미시장자유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~ 3. (생략)
4.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

②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

----- 산업통상
부 -----
-----.

13. “서비스사업”이란 「산업발전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.

제3조(투자유치위원회 설치) 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
----- 회의에 부치는 -----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한 차례만 연임 -----

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, 간사는 투자유치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투자유치담당주사가 된다.

④ (생략)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·③ (생략)

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둔다.

1. ~ 5. (생략)

⑤ (생략)

제9조(기업유치단)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촉진 및 전략산업 유치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

-----.

--.

③ -----

-- 투자유치 담당 과장-----
---- 투자유치 담당 팀장 --
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(회의) ① -----
----- 회의 일시-----
----- 회의 개최 3일 전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 갖추어 둔다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⑤ (현행과 같음)

제9조(기업유치단) ① -----
--- 투자 촉진 -----
----- 경

제 관련 기관, 단체, 기업, 학계 등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미시 기업유치단(이하 “기업유치단”이라 한다)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기업유치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)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해서는 「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2조(입지지원)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「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제13조(고용보조금의 지원) ①

제 관련 -----
-- 관련 분야-----

----- 운영할 -----
--.

② -----

----- 그 밖의 -----
-----.

제11조(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) 법 제13조, 제13조의3-----

----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-----
-----.

제12조(입지지원) -----

----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-----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고용보조금의 지원) ①

제24조(이전보조금 지원) ①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25조(국내기업 지원대상)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, 신규 상시고 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있다.

제24조(이전보조금 지원) ① -----

----- 본사, 공장 또는 연구소를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④ 연구소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연구를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50퍼센트 내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
⑤ 연구소 임차 및 이전의 경우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총 3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25조(국내기업 지원대상) ① --

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
에 한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제25조의3(국비지원 기업에 대한
지원특례) ① 국비지원대상이
되는 수도권이전기업, 국내복귀
기업, 신·중설 기업, 상생형 지
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지원은
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
「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
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
금 지원기준」이 정하는 바에
따른다.

② (생략)

제25조의4(근로자 이주정착금 지
원) ① 시장은 시 관내로 이전
하거나 신·중설, 국내복귀기업
중 시와 투자양해각서(MOU)를

----- 기업으로
한정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은 연구소와 연구인력의
지역 유치를 위해 제1항에도 불
구하고 투자금액이 10억 이상이
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
인 국내기업에 대하여 연구소를
관내로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는
경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
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25조의3(국비지원 기업에 대한
지원특례) ① -----

--- 신증설 -----

산업통상부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5조의4(근로자 이주정착금 지
원) ① -----

--- 신증설 -----

내에 신설 또는 증설 투자하는
경우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해 발
생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
1회에 한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
지원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 한정하여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연구인력 우대 혜택) ①

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의 연구소
및 소속 연구인력이 관내로 주
소 이전하는 경우 해당 연구인
력에 대하여 월 100만원씩 2년
간 우대 혜택을 지원할 수 있으
며,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
정한다.

② 시장은 기업의 본사, 공장 또
는 연구소에 대한 3년 이상 관
내 존치·확장 관련 투자협약을
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소속
연구인력에게 1인당 월 30만원
한도에서 1년 단위로 3년간 우
대 혜택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세
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28조(연구소 및 연구인력 처우

개선) 시장은 기업의 연구소 관
내 신증설 또는 제27조제2항의
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 연구소

② (생 략)

제30조(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) 시장은 투자 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퍼센트 내 기업 당 최고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31조(관광사업 지원) ① 시장은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토지 구입비, 건축비, 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,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내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보조금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신·재생에너지설비 설치 기업에 대한 지원) -----

----- 신·
재생에너지 -----

-----.

제31조(관광·서비스사업 지원)
① -----
제2조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
관광 및 서비스사업-----
----- 상시고용인원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 관광 및 서비스사업-----
-----.

제35조(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,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.

1. ~ 7. (생략)

8.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3조, 제14조, 제21조, 제22조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,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<신설>

제38조 (생략)

제35조(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) ① -----

----- 지원받은 자-----

지원받은 금액-----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----- 목적 달성-----

② -----

----- 감소 인원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8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, 공공기관,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39조 (현행 제38조와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산업발전법 시행령」

제3조(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)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”이란 별표 2의 업종을 말한다.

② 생략

[별표 2]

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(제3조제1항 관련)

해 당 업 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○환경 정화 및 복원업	39
○도매 및 상품중개업	46
○전자상거래업	47911
○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	52991
○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	581
○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
○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	5911
○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5912
○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	59201
○전기통신업	612
○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62
○정보서비스업	63
○연구개발업	70
○법무관련 서비스업	711
○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	712
○광고업	713
○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	714
○경영컨설팅업	71531

○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72
○수의업(獸醫業)	731
○전문디자인업	732
○번역 및 통역서비스업	73902
○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	73903
○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	73904
○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3909
○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	74100
○보안시스템 서비스업	75320
○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	75991
○전시 및 행사 대행업	75992
○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(신용정보를 수집·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)	75993
○포장 및 충전업	75994
○온라인 교육 학원(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	85503
○기술 및 직업훈련학원	8566
○병원	861
○의원	862
○기타 보건업(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)	869

□ 「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10. 생략

11. “문화·지식서비스사업”이란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「산업발전법 시행령」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.

12. 생략

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안 제23조제2항 : 연구소 신증설의 경우 현금지원에 관한 사항
- 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: 이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
- 안 제27조 : 연구인력 우대 혜택에 관한 사항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연구소의 투자금액, 임차료 및 연구 인력 수 등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산 소요는 예상되나 비용의 구체적인 추계는 어려움

4. 작성자

- 투자유치과 투자유치1팀 최진주(☎480-6122)

소 관 부 서		투자유치과
입 안 자	과 장	유 태 란
	팀 장	조 용 경
	담 당 자	최 진 주 (480-6122)